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489,333,992	284,680,020
일반회계		8,624,714,723	258,741,442
특별회계		864,619,269	25,938,578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864,619,269	25,938,578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4,196,104	125,883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7,635,404	829,0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82,963,830	14,488,91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153,055	184,59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1,490,719	644,722
	소방특별회계	322,058,570	9,661,757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121,587	3,64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2,135,27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15,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2020년도에 한하여 연도 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